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0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24. 9. 2.(월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강동오 의원 외 9명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강동오 의원 외 7명
- 제안일 : 2024. 8. 16.
- 회부일 : 2024. 8. 19. (의안번호 : 24-93)

2. 제안이유

마포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함께 지정벽보판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지정벽보판의 위탁과 관련한 근거가 미비하고,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의 경우 공공 운영(무료)에 따라 수익성 저조 및 소상공인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오다 현재 일부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을 추가하고, 수탁자 선정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게시율 증대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선정 방식을 조례에 규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 추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수탁자 선정 방법 규정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2
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- 입법예고 : 2024. 7. 29. ~ 8. 5. 결과: 의견 없음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

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강동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을 추가하고, 수탁자 선정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게시율 증대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선정 방식을 조례에 규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적합성·타당성
 - 본 개정안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와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법

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벽보판의 운영과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마포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현황

- 위탁업체: (주)한성디자인기획
- 위탁기간: 2024. 2. 1. ~ 2025. 1. 31.
- 위탁대상: 연립형 18개소, 108면 / 저단형 73개소, 153면(상업용 30면)
- 게시수수료(1회/15일 기준)

구분	연립형게시대			저단형게시대		
	광고대행료	도로점용료	수수료	광고대행료	도로점용료	수수료
상업용	93,600	26,400	10,000	63,600	26,400	10,000
공공용		-	-	-	-	-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(안 제17조)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 추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수탁자 선정 방법을 규정하여 신설하는 내용임.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와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지정벽보판을 위탁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간수탁자의 관리 범

위를 넓히고, 더욱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, 법적 근거 마련과 수탁자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및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거리 무단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근절되도록 지정계시대를 충분히 활용하고 소관 부서는 불법현수막 단속과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0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5조의2(국가와 시·도의 지원 및 시·군·자치구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 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3.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4.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5.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
6. 필요한 예산의 확보,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7. 우수 광고물,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의 협의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 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·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.

- ④ 시장 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)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,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·운영하며, 광고주·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 등은 관광진흥,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(併記)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등(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)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24. 7. 15.] (일부개정) 2024. 7. 15. 조례 제09313호

제12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·관리기준 등)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,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,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가. 주요 교차로·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

나.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

다.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

2.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,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,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, 색깔은 무채색·저명도·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만을 게시할 수 있으

며,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조제2항단서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2.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.
3.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,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. 다만,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, 공개추첨,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가.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
 - 나.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
 - 다.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6.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.